

**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**
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7.

발 의 자 : 강준현 · 김남근 · 김승원
박상혁 · 송재봉 · 유동수
이강일 · 이소영 · 이재관
이학영 · 임오경 · 정태호
허영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속히 진화·지능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. 또,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계좌·거래정보만으로는 범죄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,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하여 범죄 확산 방지에 제약이 있음. 특히, 피해계좌나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가 탐지되더라도 이를 즉시 다른 금융회사나 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일한 공유채널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, 금융회사 간 AI 기반 탐지 역량의 격차로 인해 신종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,

금융·수사·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·분석할 수 있는 정보공유 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·운영하도록 하고자 함.

아울러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및 제공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 공유·분석되는 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. 또,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정보제공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(안 제2조제8호·제13조의4 신설).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사기관련의심계좌”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.

가. 피해금의 입금·이체·송금·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

나.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

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4(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) ① 금융회사, 전기통신사업자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수사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사기정보제공기관”이라 한다)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(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 이하 “정보공유분석기관”이라

한다)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.

1. 피해발생계좌,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2.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번호·단말기기·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3.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·수단에 관한 정보(이하 이 호에서 “개인정보등”이라 한다)를 수집하는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홈페이지, 응용프로그램,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 및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(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)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4.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·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

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·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사기정보이용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.

④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)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.

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⑥ 사기정보제공기관,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

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」 제4조 및 제4조의2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제35조 및 제38조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

⑦ 사기정보제공기관,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
2.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
3.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
4.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,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·신용·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,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의 요건 및 절차,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“사기관련의심계좌”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.</u> <u>가. 피해금의 입금 · 이체 · 송금 · 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</u> <u>나.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</u> <u>제13조의4(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) ① 금융회사, 전기통신사업자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수사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사기정보제공기관”이라 한다)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</u>
<u><신 설></u>	

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
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
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(전
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
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
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
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 이
하 “정보공유분석기관”이라 한
다)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
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.

1. 피해발생계좌, 사기이용계좌
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
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
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보

2.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
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
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
전기통신번호·단말기기·이
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정
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
용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
보

3.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

1호에 따른 개인정보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·수단에 관한 정보(이하 이 호에서 “개인정보등”이라 한다)를 수집하는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홈페이지, 응용프로그램,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 및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(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)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4.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

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·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·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사기정보이용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.

④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

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
사기 정보 제공 기관 으로부터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
따른 고유식별정보(같은 법 제2
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
포함한다)를 제공받아 처리할
수 있다.

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
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
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·
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
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처
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
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그
밖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을
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·물리
적·관리적 대책을 수립·시행
하여야 한다.

⑥ 사기정보제공기관, 사기정보
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
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
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
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
하지 아니한다.

1.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

장에 관한 법」 제4조 및 제4조의2
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제35조 및 제38조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

⑦ 사기정보제공기관,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

2.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

3.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

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
할 수 있도록 할 것

4.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
예방,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
· 신용 · 금융거래에 관한 정
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
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사항

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
정보의 제공 및 처리, 정보공유
분석기관의 지정의 요건 및 절
차,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